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875호 2012. 2. 15.(수)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81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의회 규칙 제12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인천광역시서구의회 규칙 제1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2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2년 2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81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5명” 을 “6명” 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직원” 을 “센터장” 으로 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을 “운영지침
을” 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구” 를 “시 및 구”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김 영 옥

2012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 12 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위 원 회 명	직 위	직 급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2명, 지방행정주사 1명
기 획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복 지 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김 영 옥

2012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 13 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0조의2”를 “제57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2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이 일부개정(2011. 11. 1.)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 나. 지방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에 대한 비위 유형을 추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서 음주운전 비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 1의2)
- 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서 성폭력, 성희롱 외에 성매매 비위의 유형을 추가(안 별표 1)

다. 그 밖의 징계부가금 관련 용어 정리 및 미비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전화 : 032-560-4102, FAX : 032-560-2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을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4의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 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양정감정기준”을 “징계의 감정기준”으로 하고, “음주운전 사건 비위”를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양정감정기준”을 “징계의 감정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그중”을 “그 중”으로 하고, “중한”을 “무거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를 “승진임용 제한기간에”로 하고, “1년이내”를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1의2와 별표 1의3을”을 “별표 4와 별표 1의2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 관련)”을 “(제2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6. 청렴의무 위반란과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u>청렴의 의무 위반</u>	<u>별표 4와 같음</u>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u>라. 음주운전</u>	<u>별표 1의2와 같음</u>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별표 1의2를 별표 4로 하고, 제목 중 “(제7조 관련)”을 “(제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제목 중 “(제2조 관련)”을 “(제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정직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